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703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 2. 제안이유

-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 제3조)
-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도 첨부)

입법예고(2019. 3. 21 ~ 4. 10.) 결과: 의견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 5.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로 정의(안 제3조)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근거로 일상 속에서 즐기는 생활관광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관광향유권을 증진하는 선언적인 규정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원의 확충과 관련 시책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의 탄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시민의 관광기본권) 모든 시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이하 “관광기본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기타 띄어쓰기와 단순한 자구 수정 등으로 개정이 타당함.